

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3. 3. 27. (월)

## □□노총 ○○○○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위원장 등 구속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2. 9.부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하여
  - 서울,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고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다수 수사 중으로,
  - 오늘(3. 27.) 그 중 □□노총 ○○○○건설노조 위원장과 같은 노조 △△△△본부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음
- 수사결과, 피고인들은 ①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체(이하 '피해 업체')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 피해 업체들이 거부함에도 각종 협박으로 고용을 강요하거나, ▲ 피해 업체들로부터 지급 의무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금품을 갈취하였고, ② 취득한 금품 중 상당액을 피고인들과 같은 조합 간부나 직원의 급여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명백한 불법적 관행이 건설현장에 계속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음
- 피해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의지를 신뢰 하고서야 자유롭게 피해진술을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고용강요, 금품 갈취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다고 밝힘
- 현재 노조 관련 유사사건 다수를 수사 중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 1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A○○(50세, □□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2. B○○(38세, 같은 노조 △△△△본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 10. ~'22. 10.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 업체를 상대로, ▲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하거나, ▲ 그러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① 각 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②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 갈취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폭처법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 2

## 주요 수사 경과

- '23. 2. 28. 피고인 2명 구속 / 3. 8. 검찰 송치
- '23. 3. 8.~24. 피고인, 피해 업체 직원 등 추가 검찰 조사
- '23. 3. 27. 구속 기소

# 3

## 이 사건 범행의 특징

- **철근콘크리트 공정 특성의 악용**
  -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 ① 노동집약적이고, ② 고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중장비가 연속적으로 투입되며, ③ 정시에 마감되어야 여타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의 준수가 특히 중요함
  - (노조의 고의적 공기 지연 위협) 원청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피해 업체들은 항상 공기 준수 압박을 받는데, 피고인 등 노조 간부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 공사현장 난입, ▲ 집회를 빙자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인한 민원 야기,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제기 등으로 공정을 지연시킴

## ○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 고용 강요

- 피해 업체들은 노조에서 고용을 강요하는 인력들의 경우, 평소 ▲ 작업시간 중임에도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현장을 무단이탈하고, ▲ 고의적 태업으로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고질적 문제가 있어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원을 非노조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토로함
- 그럼에도 피해 업체들은 노조가 위와 같이 공정을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처럼 위협하며 반복적으로 현장에 찾아와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기에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 ○ 지급 의무 없는 금품 갈취

- 피고인 등 노조 간부들은 고용을 강요하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내세워, ①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속칭 '전임비')를 요구하고, ②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해당 현장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금원을 갈취하였음
- 피해 업체들은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기준수 등을 위해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자포자기한 나머지 지급 의무 없는 전임비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함

## ○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사익 취득

- 갈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어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여 사익을 취득함

###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간부, 상근 직원에 대한 주요 발언>

- ▶ 단협비(단체교섭을 빌미로 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많이 찍어와라 / 단협을 월 120개로 유지해야 한다
- ▶ 1순위로 단협을 신경쓰고, 할당량을 맞추어라 / 전임비 개월 수가 짧다
- ▶ 그 현장은 사진을 찍어서 고발해라 / 월 1회 99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속하자

※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통해 피고인 A는 월 급여 800만원(위원장 활동비 연 8,000만원 별도)를, 피고인 B는 월 급여 450만원을 받아왔음 → 피고인들 소속 노조는 노조 간부 등 월급으로만 매월 약 8,000만원 지출 중

## ○ 건설현장 근로관계의 왜곡

- 과거 일용직 근로자들은 팀장(속칭 '오야지')을 통해 용이하게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었음에도,
- 이 사건과 같은 노조의 고용 강요 등 위법행위가 본격화된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더 이상 노조를 통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조합비를 내고 노조에 가입해야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음

## 4 수사 의의

### ○ 노동조합의 활동을 빙자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계속

- 단체협약,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운 고용 강요, 금품 갈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음을 확인

### ○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에 따른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 가능성 확인

- 피해업체 조사 결과, ① 과거에는 수사 협조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 진술을 주저했으나,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고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고, ② 올해부터는 건설현장에서 고용 강요, 금품 갈취피해가 상당히 줄었다고 밝힘

## 5 향후 계획

### ○ 추가 송치된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혐의와 공범관계 여부를 충실히 보완 수사하고,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현재 검찰, 경찰은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현재까지 총 5개 노동조합의 간부 8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총 9개 노동조합의 간부 80여명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